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7. 23.

개정 2021. 5.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한국체육대학교 강사의 채용절차, 심사방법, 임용계약, 재임용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구분)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3조(채용계획) ① 총장은 학기단위로 학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강사채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채용계획 수립 시기를 학기단위 이외에 할 수 있다.

제4조(채용공고)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개채용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채용분야, 담당교과목, 주당 강의시간,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채용우대 등) ① 학문후속세대에게는 교육경력 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본교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이 강사 채용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개채용

제6조(서류접수) ① 공개채용할 때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강사 임용 지원서(별표 1) 및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는다.

② 접수한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단계) ①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1. 기초심사(서류) :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2. 전공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학문적 우수성 등
3. 면접심사(대면) : 전공심사 내용 및 교육자적 자질, 열정 및 인성 등

② 위원회는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별표 2)에 따라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별표 3)를 작성한다. 이 경우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위원회에서 기초·전공심사 실시 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로 선발한 인원에 대해 별도의 면접심사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강사 신규채용 면접심사표(별표3-1)를 작성한다.

④ 기초심사는 A(매우적합), B(적합), C(부적합) 평가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B 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로 결정한다.

⑤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되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각 심사단계별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한 점수가 어느 하나의 심사단계에서 미흡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⑥ 총장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공심사 평균점수와 면접심사 평균점수를 합산 한 후 높은 순위대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합격자가 2명 이하일 경우 전원)를 강사 임용후보자로 대학인사위원회에 추천(별표 4)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면접심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취득점

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⑧ 대학인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와 검증을 거쳐 강사 임용후보자 순위를 부여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심의와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검증을 통해 추천한 강사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모두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강사 임용후보자를 추가로 추천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채용

제8조(임용요청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과장, 교양교직과정부장(이하 “각 학과장 등”이라 한다)이 각각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장(소속 대학장 경유) 등은 긴급하거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바로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제7조의 심사단계를 생략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심사단계) ① 위원회는 특별채용으로 요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기준,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를 강사 임용후보자로 대학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와 검증을 거쳐 적격자를 강사 임용후보자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심의와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임용절차

제10조(임용예정자 통보) 총장은 모집단위별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예정자가 되었음을 통보한다.

제11조(임용서류 제출) 임용예정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력조회 등) ① 총장은 임용예정자에 대한 학력·경력 및 신원, 성범죄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고 확인한다.

② 임용예정자에 대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인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총장은 1순위의 강사 임용후보자를 임용한다. 다만, 임용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사항) ①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별표 5)한다.

1. 임용기간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2. 임금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학기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지급. 다만, 계절수업 등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지급
3. 면직사유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
4. 재임용 절차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정한 요건 및 각 학과, 교양교직과정부(이하 “각 학과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임용 요건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가. 강의시간 :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당 9시간 이내). 다만, 계절수업에 강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 나. 복무 등 근무조건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학과 등에서 정하는 근무조건

② 각 학과장 등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임용 절차

제14조(재임용절차 및 기준) ①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제3항에 따라 재임용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별표 6)를 소속 각 학과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임용을 위한 심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되, 강사 재임용 기준(별표 7)에 따라 강사 재임용 평가표(별표 8)를 작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에게 강사 재임용 거부서(별표 9)를 통보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는 강사에게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가 접수되거나 서면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후 그 결과(별표 10)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임용 미 신청자, 재임용 대상자, 재임용 거부 대상자 및 거부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며,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강사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재임용 거부 대상자에게는 거부 의사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⑧ 대학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재임용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5조(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 심사항목은 강의계획서 및 성적입력, 강의실적, 강의평가, 면직사유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학과 등은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항목별로 P(적격) 또는 F(부적격)로 평가한다.
- ③ 심사항목별로 위원 모두가 P(적격)로 평가한 경우에만 재임용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위원 중 1명이라도 P(적격)로 평가하면 재임용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④ 강의계획서 및 성적입력에 대한 심사는 강사가 담당하는 각각의 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입력 한 경우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강의실적에 대한 심사는 강의 계획서, 교수법, 매뉴얼, 관련 자료 활용실적 등 강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경우 P(적격)로, 부적절한 경우 F(부적격)로 평가한다.
- ⑥ 강의평가에 대한 심사는 담당하는 과목이 각각 5.0만점 중 3.5점 이상인 경우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의평가 응답률이 50%미만이거나 소수의 수강생이 참여함으로써 강의평가가 배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면직사유에 대한 심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로 평가한다.

제6장 기타

제16조(강의제한 등) 강사가 담당하는 과목이 폐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 0. 00.)

이 지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5. 주요 연구실적(최근 5년간)

제목	학술지 /출판사	게재 확정일자	저자수	참여형태

※ 연구실적 : 논문·저서·역서·공연실적 등

첨부 : 주요 교육·연구경력,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분량)

6. 선수경력(채용 교과목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선 수 경 력 사 항				비 고
부터 (년,월)	까지 (년,월)	기간 (년,월)	소속기관 및 단체	

7. 수상경력(채용 교과목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

국 제 대 회 수 상 경 력 사 항 (최근 10년 이내 대표 경력 5개)				비 고
대회명	대회기간 (년,월)	수상경력	시행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별표 2]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제7조제2항 관련)

심사구분	심사항목	평점만점	심사방법
기초심사	1. 지원자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2.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 분야와의 일치도	P/F	① 기초·전공심사에서 5배수 이하로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진행 할 수 있음 ② 전공심사만 진행하거나(면접심사 생략),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전공심사	1.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2. 지원자의 학문적 우수성 등	100	
면접심사	1. 전공심사 내용 2.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100	

[별표 3]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 (제7조제2항 관련)

모집단위	채용학과	채용분야	교과목명		성명	접수번호
			'○○.○학기	'○○.○학기		

<기초심사>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P/F)
1. 지원자의 자격기준(연구·교육 경력, 연령 등)은 충족하는가?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2. 지원자의 전공분야가 채용분야와 일치하는가?						

※ “A” : 매우적합, “B” : 적합, “C” : 부적합

<전공심사> 면접심사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해당되는 경우만 “√”함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평균점수)
1.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등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2. 지원자의 학문적 우수성 등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70~79점, “미흡” : 60~69점, “매우미흡” : 60점 미만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 실시() ※ 해당되는 경우만 “√”함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평균점수)
1. 지원자의 강의실적, 학문적 우수성 및 잠재적 역량 등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2. 지원자의 교육자적 자질, 열정 및 인성 등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70~79점, “미흡” : 60~69점, “매우미흡” : 60점 미만

심사결과	추천여부 (○, ×), 추천순위 ()
------	-----------------------

20 .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학과(교양교직과정부)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표 3-1]

강사 신규채용 면접 심사표 (제7조제2항 관련)

채용학과	채용교과목	교과목명		성명	접수번호
		'○○.○학기	'○○.○학기		

〈**면접심사**〉 면접심사 별도 실시()

심사내용	심사결과					
1. 지원자의 강의실적, 학문적 우수성 및 잠재적 역량 등 2. 지원자의 교육자적 자질, 열정 및 인성 등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평가결과 (평균점수)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 70~79점, “미흡” : 60~69점, “매우미흡” : 60점 미만

심사결과	추천여부 (○, ×), 추천순위 ()
------	-----------------------

20 . . .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_____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표 5]

강사 임용 계약서

○○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2. 강의개설학과 :
3. 학기별 담당과목 및 주당 강의시간

담당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합계			

※ 학기별 시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금, 방학중임금 등) “갑”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 등에 따라 학기단위(6개월)로 산정하여 매월 ○○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다.

제3조(면직) “을”의 면직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면직)에 따른다.

제4조(재임용 절차) “을”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임용계약 및 재임용 절차 등)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다.

제5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학기별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당 9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을”에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계약 해지 및 변경) “을”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임용취소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된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 조건)

1. “을”은 한국체육대학교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전임교원이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는 전임교원이 강의에 복귀하였을 경우 재임용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인)

(을) 계약당사자 성명 (인)

주소 :

[별표 5-1]

강사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로 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강의시간 및 근무기강은 한국체육대학교의 근무수칙을 따른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교무처장 및 학과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3. 근무 중 알게 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임용기간, 계약 만료 후에도 외부로 누설, 유출, 사적 이용을 하지 않는다.
 - 개인의 신상이나 학적에 관한 사항
 - 업무기간 중 알게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관한 사항
 -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익 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한국체육대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하지 않는다.
5.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수업권을 가진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법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어길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과 면직 등 한국체육대학교측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7]

강사 재임용 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소속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학기	'○○'학기			
					0000. 00. 00. ~ 0000. 00. 00.

1. 강의계획서 및 성적 입력 실적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로 강의계획서와 성적입력을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입력한 사실
 - 강의계획서와 성적 입력을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소명자료 등(선택사항)
2. 강의 실적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강의계획서
 -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련 활용자료 리스트 등
 - 위 교수법 등과 학생 역량 향상과의 관계성
 - 휴강내역 및 사유, 보강 내역 등
 - 학생지도 및 상담실적 등
 - 성적평가의 기준 및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 실적
 - 그 밖에 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 등
3. 강의평가 실적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 위 강의평가 결과가 3.5점 미만인 경우 소명자료(선택사항)
 - 중간강의 설문결과 점수와 소명자료(선택사항)
4. 각 학과 등에서 계약시 추가한 평가항목에 관한 실적 (대상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
 -

[별표 8]

강사 재임용 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심사방법
강의계획서 및 성적입력	1. 담당과목별로 강의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2. 담당과목별로 각 학생의 성적 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3. (필요시) 소명자료	P/F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렇지 않은 경우 F>
강의실적	1. 담당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우수성 2.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 련자료 등 활용 실적 및 학생 역 량 향상과의 관계성 3. 휴강 및 사유, 보강 내역 4. 학생지도 및 상담실적 5. 성적평가·기준 및 공정성 6.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P/F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중 1명이상이 적격으로 평가하면 P, 모두 부적격인 경우 F>
강의평가	1.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2. (필요시) 중간강의 설문결과 3. (필요시) 소명자료	P/F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렇지 않은 경우 F>
각 학과 등의 평가요건	1. 각 학과 등에서 계약시 추가 로 정한 사항	P/F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렇지 않은 경우 F>
면직사유	1.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해당 여부	P/F	위원 합의에 의한 평가 원칙 <점점결과 필요시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요청 여부 결정>

[별표 9]

강사 재임용 평가표 (제14조제3항 관련)

소속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학기	'○○.○○'학기			
					0000. 00. 00. ~ 0000. 00. 00.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강의계획서 및 성적입력	1. 담당과목별로 강의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2. 담당과목별로 각 학생의 성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3. (필요시) 소명자료	
강의실적	1. 담당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우수성 2.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련자료 등 활용 실적 및 학생 역량 향상과의 관계성 3. 휴강 및 사유, 보장 내역 4. 학생지도 및 상담실적 5. 성적평가·기준 및 공정성 6.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강의평가	1.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2. (필요시) 중간강의 설문결과 3. (필요시) 소명자료	
학 과 에 서 정한 사항	1. 각 학과에서 계약시 추가로 정한 요건	
면직사유	1.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해당 여부	

재임용 평가 결과	충족() / 미충족()
-----------	----------------

20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학과(교양교직과정부)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서명)

[별표 10]

강사 재임용 거부서 (제14조제4항 관련)

소속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학기	'○○.○○학기			
					0000. 00. 00. ~ 0000. 00. 00.

<재임용 거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귀하의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학과(교양교직과정부)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서명)

[별표 11]

강사 재임용 심사결과(제14조제6항 관련)

심사대상자		재임용 신청여부	평가결과		재임용 거부 사유
성명	생년월일		재임용 대상	재임용 거부	
합계		명	명	명	

- ※ 재임용 신청여부 :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면 “○”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로 기재
- ※ 재임용 대상 : 재임용 평가결과 충족한 경우로 “적격”으로 기재
- ※ 재임용 거부 : 재임용 평가결과 미충족한 경우로 “부적격”으로 기재
- ※ 재임용 거부 사유 : 거부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 붙임 1. 각 강사별 재임용 평가표 사본(건)
 2. 재임용 거부대상자별 재임용 거부서(건)

20 .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학과(교양교직과정부)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